

9월5일(금) 12:00 이후 보도바랍니다



보도자료

- ▶ 2008. 9. 5. 배포
- ▶ 총 3쪽 (사진없음)

▶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중윤
TEL : 02-2119-7113
E-MAIL : pab1@chol.com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노동부 뉴스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노동부, 생활공감형 정책 과제 발표

- 서민·취약계층의 고용안정, 근로조건 보호 중심 -

○ 노동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발굴·추진에 맞추어 서민·취약계층의 고용안정, 취업지원, 근로조건 보호 대책 중심으로 노동부의 생활공감형 정책을 발표하였다.

- 이는 8.15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「생활공감정책」을 대폭 발굴·실행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.

○ 정부는 고유가, 고물가로 인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 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'작지만 가치 있는' 「생활공감형 정책」을 적극 발굴해왔다.

- 노동부는 '일자리가 곧 복지'인만큼,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원이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판단하고, 이에 역량을 집중하였다.

□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한 대책 중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○ (청년) 정부지원 청년인턴제,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 등 8.29 발표된 청년고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.

- 특히 **정부지원 청년인턴제와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**에 대한 관심이 큰 만큼, 동 사업이 내실있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.

* 정부지원 청년인턴제 : 청년인턴제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턴기간중 1인당 월 약정임금의 50%를 지원하여 고용 촉진

* 뉴스타트 프로젝트 : (1단계)개인별 심층상담(1개월, 30만원 지급) → (2단계)취업의욕·능력증진 프로그램 → (3단계)집중 취업알선

○ **(여성)** 우리나라는 출산, 육아 부담으로 인하여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아 **'다일센터' 운영 등 일·가정 양립 정책**을 통하여 기혼여성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.

* 다일센터(여성다시일하기센터) :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, 직업훈련, 보육정보 제공,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 제공('08년 하반기 시범 운영, '09.1월 50개소 지정 예정)

○ **(비정규직)** 비정규직보호법을 통한 차별 개선과 함께 **정규직 전환 지원·유도 등 고용여건 개선**을 지속 추진한다. 특히 내년부터는

-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, **1인당 30만원의 법인세**를 공제하고

- **능력개발카드제 확대, 훈련생 생계비 대부** 등을 통해 훈련과 일을 병행 할 수 있도록 한다.

- 또한 영세사업장의 고용보험료 가입률이 낮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빈번하여, 특별신고기간 내 신고한 사업장·근로자에 대해서는 **체납 고용·산재보험료를 면제**해준다.

○ (직업능력개발계좌제) 근로자나 구직자의 훈련과정 선택권을 강화하는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도입을 추진한다.

- '08.9월부터 '09.12월까지 시범 운영하는데, 우선 일부 지역(대구, 광주)에서 운영 후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- 동 사업이 성공하려면 전문적 상담을 통한 적합훈련과정 안내와 훈련시장의 경쟁기반 조성이 전제 되어야 하는 만큼 관련 인프라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중이다.

□ 한편 고용안정, 일자리 지원 대책 이외에 민생과 직결된 근로조건 보호대책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

○ (체불임금 해소) 도산사업장 근로자 체당금 지원,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체불근로자 민사소송 지원 등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지속 추진·강화한다.

- 특히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·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 집중하고 있다.

* 집중지도기간 설정·운영(8.25~9.12), 지방노동관서별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 편성 등

○ (연소자 근로조건 보호) 방학기간에는 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(패스트푸드점, 주유소 등)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 등 집중 단속한다.

- 노동부와 청소년 지도단체 등 총 22개 기관이 참여하여 “연소근로자 보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협약서”를 체결하고 연소근로자 근로조건외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갈 계획이다.

<붙임> 노동분야 생활밀착형 정책홍보과제

노 동 분 야
생활밀착형 정책홍보과제

2008. 8.



목 차

1. 청년 고용 촉진 대책	1
2.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(다일센터) 지정·운영	3
3.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	4
4. 고용·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면제	5
5.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범사업	6
6. 체불임금 해소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	7
7.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	9
8. 사회적 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	10
9. 취약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	11
10.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 활성화	12

1. 청년 고용 촉진 대책

□ 과제개요

- '07년 청년고용률은 42.6%로 OECD 평균 54.4%에 비해서도 낮으며 '04년(45.1%) 이후 3년 연속 하락
 - 특히, 청년 실업자를 포함한 취업준비자·유휴인력 등 취업애로층*은 1백만명을 상회하여 체감 실업이 높은 상황
 - * 취업애로층(천명) : '03년 906 → '05년 1,025 → '07년 996 → '08.6월 1,035
- ⇒ 최근 경기부진으로 악화된 청년 실업자·취업 준비생 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단기적으로 집중·시행하면서, 학교교육 개혁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·추진 필요

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

- '08.8.29 범정부 「청년 고용촉진 대책」 마련·시행
 -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: 정부지원 청년 인턴제(최장 1년간 임금 50% 지원), 청년 창업 지원(창업특례보증확대 1,000억원→3,000억원) 청년 사업적 기업가 창업자금 대부('09년 100개소, 약 5천만원), 해외취업 확대(5만명) 등
 -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: 취업애로 청년 뉴스타트 프로젝트('09년 1만명), 청년층 취업포털 확충, 고학력 여성 커리어 개발 지원('08년 12개 대학 950백만원) 등
 - 직업체험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: 단기 복무장병 취업캠프 도입(연 1만명), 마이스터 고교 지정('08년 20개교, '10년 이후 50개교) 등

□ 기대효과

- 청년고용촉진대책 추진을 통해 현재 100만명 수준의 취업애로 청년층 감소 기대
 - 청년고용 중장기대책이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될 경우 추가 효과 가능

<참고> 청년고용촉진대책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

기본 방향

- 청년층의 취업애로 유형·특성별 대책에 역량을 집중
 - ➡ 청년친화적 일자리 제공으로 취업준비 비경황 축소
 - ➡ 종합고용서비스 제공으로 유휴 비경황 취업 촉진
- 산업수요 적합 인력양성·직장체험 확대로 미스매치(Job & Skill mismatch) 해소
- 청년고용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지속 추진
 - ➡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, 교육시스템 개편, 고용인프라 확충
- 산·학·관 협력을 통한 범 사회적인 문제해결 추진기반 구축

정책 과제

전략 과제

실천 과제

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



- 정부지원·민간자율 인턴제 도입
- 청년 기업가 육성
- 우량중소기업 발굴 및 추가채용 지원

직업체험기회 확대 및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



- 중·전역자 취업캠프 등 직업체험 확대
- 마이스터고 육성·대학 취업경쟁력 강화
- 산업단위 훈련-고용 원스톱 지원

인프라 확충 통한 미스매치 해소



- 청년 New Start 프로젝트
- Job World, 취업포탈 등 인프라 확충

중장기 정책 지속 추진

- 서비스산업선진화 등 일자리창출 ● 대학교육 구조개혁 ● 고용인프라 확충

정책 목표

청년 취업애로계층 감소

2.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(다일센터) 지정·운영

□ 과제개요

-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('06년 15~64세 여성 고용률 : 한국 53.1%, OECD 평균 56.8%)
 - 특히 출산·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현상이 여전하여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부진
- ⇒ 기존 취업지원 인프라가 있는 민간기관을 경력단절여성 고용지원센터로 지정 (여성부와 공동 추진, '09년도 50개소)
 -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, 직업훈련, 보육정보 제공, 사후관리 서비스 등 One-stop 고용서비스 제공

□ 추진상황

- '08.1월 신정부 인수위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관련하여 노동부 - 여성부 공동으로 "여성다시일하기센터"(다일센터)를 운영토록 의견 개진
- '08.4월 우리부와 여성부가 공동 운영을 위한 역할 분담 방안을 정하고 중기 재정계획에 반영('12년까지 100개소 지정 계획)

□ 향후계획

- '08.11월 다일센터(2~3개소) 시범운영
- '09. 1월 다일센터 50개소 지정·운영

□ 기대효과

- 적극적 취업촉진 정책을 통하여 비경황 상태에 있는 30~40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

→ 전체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향상 기대

3.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원

□ 과제개요

- 영세 소규모기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, 퇴직금·상여금·직업능력개발 등 기업 복지후생에서 소외 → 정규직 전환율 15% 수준(OECD평균 30%)
- 비정규직 고용 개선을 위한 복합적인 노동시장 차원의 처방 →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 확보, 취약근로계층의 고용여건 개선 도모

□ 추진상황

-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법 제정과 함께 「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」 수립('06.9), 추진
 - ※ 비정규직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·능력개발 기회제공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
- 비정규직법 시행('07.7) 계기로 차별시정, 정규직 전환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,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·추진중

□ 향후계획

- 영세사업장 취약근로자 고용보험 확대 추진(9인이하 사업장 자진신고시 체납보험료 면제, 현재 특별법 제정중)
- 비정규직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: 능력개발카드제 확대('08년 148억원 → '09년 187억원), 주말·단기 고급 과정 제공(비정규직 JUMP, '09년 111억원), 훈련생 생계비 대부('09년 99억원)
-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공제(1인당 30만원, 현재 관련법 개정중)
 - ※ 정규직 전환 인센티브 추가 마련 추진
-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구조 개선을 추진할 경우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('09년 23억원)

□ 기대효과

-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으며, 생계비 지원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아 정규직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아짐
- 중소기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부담 감소

4. 고용·산재보험 체납보험료 면제

□ 과제개요

- 영세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혜택강화를 위해 가입률 제고조치 필요
 - * 기업규모별 가입률 : 4인이하 24.6%, 5-9인 49.1%, 10-29인 71.7% ('07.8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)
 - * 전체 비정규직의 44%가 9인이하 사업장에 집중 → 9인이하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가 필요
- ⇒ 지정된 특별신고기간 동안('08년 하반기 중) 자발적으로 신고한 미가입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해서 체납보험료 등 면제 혜택 부여

□ 추진상황

- '08.3.7 대책 발표. '08.6.19 법안 국회 제출 (고용보험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)
 - ※ 당초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국회 사정으로 법안심의회가 지연되고 있어 후속 조치 추진에 어려움

□ 향후계획

- 국회가 정상화되면 최우선 처리에 주력하고, 법통과시 하반기 중 특별신고기간을 지정, 고시

□ 기대효과

-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실업급여, 직업훈련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 구축
 - ※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실업급여, 산전후휴가급여·육아휴직급여, 근로자수강지원금·능력개발 바우처 지급 등 혜택을 받음
 - ※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도 고용안정사업(고용유지지원금, 신규고용촉진장려금, 각종 컨설팅 지원 등) 및 각종 사업주훈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

5.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시범사업

□ 과제개요

- 그간 공급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근로자나 구직자 자기주도적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「직업능력개발계좌제」 도입 추진
 - ※ “직업능력개발계좌제”란 근로자(구직자 포함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내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선택·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통합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

□ 추진상황

- '08.9월 이후 일부 지역(대구, 광주) 시험 운영 준비중('08년 절감예산 204억 활용)
 - 추진계획 마련('08.7월) → 적합훈련과정(ETPL) 신청 접수 및 전산 시스템 개발 등 추진중

□ 향후계획

- 적합훈련과정 심사, 전산시스템 구축, 시험운영지역(대구,광주) 담당자 실무교육 및 집중 홍보 후 계좌 발급 실시 ('08.9월 ~)
- 시험운영 모니터링 등을 토대로 '09년 전국단위 시범실시 추진

□ 기대효과

- (훈련생) 훈련시장의 서비스 구매자인 훈련생에 대한 직접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훈련 선택권 확대 및 만족도 제고
- (훈련기관) 정부 지원훈련의 진입장벽 및 규제를 완화하여 훈련시장의 확대 및 경쟁 폭진
- (정 부) 훈련비 일부 자부담, 지원한도 설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훈련을 선별하여 참여토록 유도하고, 예산배분의 효율성 및 훈련의 효과성 제고

6. 체불임금 해소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

□ 추진배경

- '08년 상반기 중 지방노동관서 신고 체불임금은 3,950억원 (49천개소, 104천명)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.7% 증가
 - 전년 이월액을 포함한 체불임금은 4,245억원 (79천개소, 111천명)

< 연도별 체불임금발생현황 >

(단위 : 천개소, 천명, 억원)

구 분	'98	'99	'03	'04	'07	'07.6	'08. 6.
사업장수	7	4	8	101	152	75	79
근로자 수	32	136	155	301	195	98	111
금 액	12,185	5,704	5,211	10,426	8,403	4,092	4,245

※ 각 전년도 이월액 포함

□ 그간의 추진 현황

- 신고사건 전담과 설치 등 인프라 보강
 - 근로감독관 증원(376명), 근로감독과를 노사지원과와 분리(30개소)하여 체불청산업무 전담토록 조치 ('06. 3. 2.)
 - ※ 근로감독과는 신고사건 전담, 노사지원과는 집단적 노사관계업무 전담
 - 임금체불의 신속해결을 위한 「체불청산지원팀」 운영(20개소)
- 5대 취약계층 및 3대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근로감독행정역량 집중
 - '08년중 22,960개소 목표 (전년대비 24.3% 상향 조정)
- 도산 사업장 근로자 체당금 지원 : '08.6월 현재 19천명, 755억원 (전년동기대비 8.2% 증가)
-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체불근로자 민사소송 지원 : '08.6월 현재 22천건, 53,063명, 소가 2,952억원 (전년동기대비 0.7% 증가)
-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저리 대부 (이자율 3.4%,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) : '08.6월 현재 1,731명, 78억원 대부

□ 향후 추진계획

- 사업장 근로감독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예방활동 강화
 - 영세소규모사업장 근로조건자율개선 지원제도 도입 ('08년 6개청 시범 운영중 '09년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협의중)
- 체불임금청산지원팀 기능 인력 보강 및 확대 ('09년 : 20개소→27개소)
 - ※ 근로감독관 2명이상 + 민간상담원을 배치
-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 운영 ('08.9월)
 - 주·월 1회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임금관련 법률상담지원
- 임금체불의 예방과 감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 ('08년~)
 - 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제, 건설업의 경우 허가 받은 사업자만 사업주로 인정 등 검토 (법 개정 사항)

□ 기대효과

- 임금체불사건 사전 예방 및 취약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강화

7.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

□ 추진 배경

- 그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속적 지도·점검 및 홍보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조건 위반 사례 여전
⇒ 최저임금 등 연소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

□ 추진현황

- '05.6월 「청소년 근로 보호 종합대책」 수립, '06년 「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」 추진
- '08.6.30. 「연소근로자 보호대책」 수립
※ 연소근로자 권익침해 신고기간 운영, 주요 포털 등에 「사이버 신고 센터」 운영 등
- '08.7.24. 「연소근로자 보호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동협약서」 체결
※ 노동부 및 총22개 기관 참여(연소자 다수고용 업종 협회, 청소년 지도단체 등)

□ 향후계획

- 연소자 다수고용 사업장(패스트 푸드점, 주유소, 일반 음식점, PC방 등) 일제점검 실시('08.6~8, '08.12~'09.2)
 - 법 위반 사례 일제 신고기간('08.7~8, '08.12~'09.2)을 통한 점검의 효과제고
- 싸이월드 등에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위반업주에 대한 「cyber 신고 센터」 운영 → 관할 지방관서 전자민원으로 바로 접수·조치

□ 기대효과

-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취약사업장에 효과적 점검을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전예방 효과 제고

8. 사회적 기업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

□ 과제개요

- 산업구조변화 등에 따른 민간부분의 고용창출능력 저하와 함께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
 -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을 '03년부터 진행 하였으나, 단기·저임금 위주의 일자리라는 지적 계속
- ⇒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스스로 자립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이 필요
 - * 예산(사회적일자리 포함) : '07년(1215억), '08년(1397억)

□ 추진상황

- '07.7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, 시행 → 총10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
 - 세제혜택(소득세·법인세 50%감면), 경영 컨설팅, 재정지원(인건비 78.8만원, 전문인력인건비 120만원/월) 등 실시
 - 다만, 시행초기 단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, 기업·지자체 등과 연계 미흡, 관련 인프라 부족 등 문제 제기

□ 향후계획

- 「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」 수립 ('08.8월 예정)
 - *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을 사업적기업 지원과 연계,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
-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“전국 투어” 실시('08.8월)
 - * 지역별 지자체장 참석 기념행사, 간담회 등 개최
- 사회적기업 관련 자본시장 육성 등 다각적 지원, 기업-지자체과 연계를 통한 우선구매 등 활성화

□ 기대효과

- 단기·저임금 일자리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,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,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
- 정부 재정 의존 없이 자체 수익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 육성

9. 취약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

□ 과제개요

-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취약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*하고 있으나, 고용지원센터의 접근성 취약 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은 미흡
 - * 전체가구 1/3이 빈곤위험에 직면(일시 15.3%, 반복 16.3%, 계속 4.0%, '06년)
-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필요
- ⇒ 이를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통한 취약계층 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, 민간 고용서비스기관을 활용하여 취약계층별로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

□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

- 취약계층 구직자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
 - * 심층상담을 통한 진단 및 취업경로 설계 → 취업의욕·능력 제고 → 집중 취업알선
- 여성·건설일용·노숙자 등 취약계층 전담 취업지원센터 운영 확대 ('08년 41개소 → '12년 100개소)
-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센터의 「집단상담, 취업특강, 경력개발 컨설팅」을 내실화하는 한편, 전문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민간위탁 확대 ('08년 39개 기관 → '12년 500개 기관 이상)

□ 기대효과

- 취약계층에게 품질 높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
- 취약계층별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품질 제고

10. 장애인 영업장소 전대지원사업 활성화

□ 과제개요

- 창업 희망 장애인 대상으로 영업장소 지원
 -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영세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1인당 1억원 이내(공동창업 시 3억원)의 영업장소를 5년간 1~2%의 전대료만 부담하여 사용토록 지원
 - * 창업자금융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연리3%,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창업소요 비용을 융자할 수 있으나 담보 제공의 부담 있음

□ 추진상황

- 연도별 지원현황

(단위 : 명, 백만원)

구 분		'01	'02	'03	'04	'05	'06	'07
영업장소 전대지원	대상자	50	62	54	53	21	37	127
	금 액	2,242	2,349	1,932	2,100	1,000	1,960	8,292

※ '07년에 한하여 8,292백만원을 복권기금에서 지원

- '08년 예산 : 22억원 (경상경비 제외) → 현재 20억원 지원
 - 잔여 예산 2억원도 전세권 설정 등의 법적 조치가 완료 후 지원 예정

□ 향후계획

- '08년 절감예산 일부인 36억원 추가 지원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중
- 성공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 지속
- 동 제도를 활용한 성공사례 홍보 실시 (각종 영상물, 책자 제작 등)

□ 기대효과

- 장애인 창업 활성화를 통해 자립 및 사회복귀 의지 제고